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2
----------	------

제출년월일 : 2006.09.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자원봉사활동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근거 및 기능 규정(안 제5조).
- 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라. 센터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형태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 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필요적 설치기관정책결정기구로 함(안 제9조).
- 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설정(안 제14조).
- 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7조).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5조

관계사업계획서 : 없음

예산수반사항 : 없음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6. 7. 19. ~ 2006. 8. 8 .(20일)

기타 참고사항

- 시·도(시·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2006. 4. 26)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 안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사무국을 두고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 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센터의 직원·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학교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한다.

②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봉사자,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중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센터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에서 계약을 체결 한다.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 설치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가족여성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원봉사담당 하순자
	담당자 성명·전화	하순자 (행정2387)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2
----------	------

제안년월일 : 2006. 10. 27.
제 안 자 : 경제 · 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센터장 및 민간위탁의 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비지급 대상에 대한 범위 축소와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중복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자

-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분코자 “정책 결정기구”를 “심의결정기구”로 수정함.(안 제9조제2항, 안 제9조 제5항)
- 실비 지급 대상을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에서 “센터”로 수정함(안 제18조)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연임” 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재 위탁”을 “1회에 한하여 재 위탁”으로 하며, 동조제5항 중 “정책”을 “심의”로 한다.

제18조 중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를 “센터”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생략)</p> <p>② 센터장의 임기는 <u>2년으로</u>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원안과 같음)</p> <p>② 3년....., <u>1회에 한하여</u></p> <p><u>연임</u>.....</p> <p>③ (원안과 같음)</p>
<p>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생략)</p> <p>② 센터의 민간위탁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기간은 <u>2년으로</u> 하고, <u>재 위탁할 수 있다.</u></p> <p>③ ~ ④ (생략)</p> <p>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p> <p>⑥ ~ ⑧ (생략)</p>	<p>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p> <p>..... <u>3년</u>.....</p> <p>....., <u>1회에 한하여 재 위탁</u>.....</p> <p>③ ~ ④ (원안과 같음)</p> <p>⑤ <u>심의</u>.....</p> <p>.....</p> <p>.....</p> <p>⑥ ~ ⑧ (원안과 같음)</p>
<p>제18조(실비 지원) 센터 또는 지원봉사수요자는 지원 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대)를 자급할 수 있다.</p>	<p>제18조(실비 지원) 센터는</p> <p>.....</p> <p>.....</p>